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주 관 팀	상품기획팀
제정일자	2009.02.23
개정일자	2013.12.23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"법"이라 한다.) 제58조에 의거 GS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.)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/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3.12.23>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나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(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)
 - 다. 판매회사 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- 라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마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해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<신설 2013.12.23>
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·투자자문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3.12.23>

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다. <개정 2013.12.23>

나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. <개정 2013.12.23>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법 제9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2 등에 따라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23>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신규 출시 상품의 수수료는 기존의 동일 유형 상품의 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의 경영진이 결정한다. <개정 2013.12.23>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 <신설 2013.12.23>
- ③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(투자일임의 경우 성과수수료 계산방법 포함)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 <신설 2013.12.23>

제6조 <삭 제> <개정 2013.12.23>

제7조(수수료의 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의 고지)

- ①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 제5항 본문의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3.12.23>

제10조(공시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2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